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 목 차 >

1. 가스 분야 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대상 정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장주영
	담당부서 (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		직급	사무관
	국장	하승철		연락처	02-2100-3186
	과장	김은경		이메일	jjy@mail.go.kr

2026. 02. 24.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가스 분야 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대상 정보		
	2.규제조문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조, 별표		
	3.위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3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6.02.27.~03.19.(예정)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민의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를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이동하여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3.3.14.) ○ 가스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와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여 규정		
	7.규제내용	○ 가스 분야 정보전송자와 전송요구 대상 정보 구체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 정보를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정보주체 등 ※ 가스 분야 정보전송자: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민법」 제32조에 따른 한국도시가스협회 * 34개(가나다순): CNCITY에너지, JB, MC에너지, 강원도시가스,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군산도시가스, 귀뚜라미에너지, 대륜이엔에스, 대성에너지, 대성청정에너지, 대화도시가스, 명성파워그린, 미래엔서해에너지, 부산도시가스, 삼천리, 서라벌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영남에너지서비스(주)구미, 영남에너지서비스(주)포항, 예스코, 인천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전북도시가스, 전북에너지서비스, 제주도시가스, 지에스이, 참빛도시가스, 참빛영동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 참빛충북도시가스, 충청에너지서비스, 코원에너지서비스, 해양에너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정보주체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번거로운 서류 발급이나 행정절차 경감, 전송 정보를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민 편의성 증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	○ (비용)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전송요구)에 대응하여 대상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비용(시스템 구축, 전송)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구축중인 에너지분야 중계시스템(중계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부 보전이 가능. 나아가 정보전송자의 전송의무는 전송시스템의 구축 상황, 중계시스템 연계 현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고시안 별표)되므로 전송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 경감 ○ (편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해 에너지요금 절감 방안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번거로운 서류 발급이나 행정절차 생략으로 국민 효용성 및 편의성이 증진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재검토기한(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설정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3호나목 및 제4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에너지(가스) 분야의 정보전송자 기준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전송자 기준) 영 제42조의2제3호나목에서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민법」 제32조에 따른 한국도시가스협회 제3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와 같다. 제4조(전송 업무의 위탁) 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도시가스협회 2. 업무 수행능력,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현행	개정안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호위원회,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송 요구 대상 정보(제3조 관련) <table><tr><th>정보 전송자</th><th>정보 항목</th><th>세부 항목</th><th>대상 기간</th></tr><tr><td rowspan="6">도시가스사업자 및 한국도시가스협회</td><td>계약 정보</td><td>계약번호, 도로명주소, 계약일자</td><td rowspan="2">전송 요구 시점</td></tr><tr><td>감면 정보</td><td>감면자격, 감면금액</td></tr><tr><td>검침 정보</td><td>검침방법, 검침일자, 검침시간, 당월가스지침, 전월가스지침, 당월가스사용량, 일별가스사용량, 시간별가스사용량</td><td rowspan="4">전송 요구 시점으로부터 3년</td></tr><tr><td>청구 정보</td><td>청구연월, 사용시작일자, 사용종료일자, 당월가스사용량, 청구금액, 기본요금, 사용요금, 부가가치세, 할인금액, 가산금액</td></tr><tr><td>납부 정보</td><td>납부일자, 납부금액, 납부방법</td></tr><tr><td>미납 정보</td><td>미납연월, 미납금액</td></tr></table>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시점에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거나, 해당 정보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송되지 않을 수 있다. ※ 정보전송자 및 정보항목은 전송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전송 가능한 정보전송자 및 정보항목 현황은 중계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정보 전송자	정보 항목	세부 항목	대상 기간	도시가스사업자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계약 정보	계약번호, 도로명주소, 계약일자	전송 요구 시점	감면 정보	감면자격, 감면금액	검침 정보	검침방법, 검침일자, 검침시간, 당월가스지침, 전월가스지침, 당월가스사용량, 일별가스사용량, 시간별가스사용량	전송 요구 시점으로부터 3년	청구 정보	청구연월, 사용시작일자, 사용종료일자, 당월가스사용량, 청구금액, 기본요금, 사용요금, 부가가치세, 할인금액, 가산금액	납부 정보	납부일자, 납부금액, 납부방법	미납 정보	미납연월, 미납금액
정보 전송자	정보 항목	세부 항목	대상 기간																	
도시가스사업자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계약 정보	계약번호, 도로명주소, 계약일자	전송 요구 시점																	
	감면 정보	감면자격, 감면금액																		
	검침 정보	검침방법, 검침일자, 검침시간, 당월가스지침, 전월가스지침, 당월가스사용량, 일별가스사용량, 시간별가스사용량	전송 요구 시점으로부터 3년																	
	청구 정보	청구연월, 사용시작일자, 사용종료일자, 당월가스사용량, 청구금액, 기본요금, 사용요금, 부가가치세, 할인금액, 가산금액																		
	납부 정보	납부일자, 납부금액, 납부방법																		
	미납 정보	미납연월, 미납금액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를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이동하여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한 단계 진일보 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3.3.14)

* 기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후 수동적 지위에 머물던 국민이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 권리행사 가능

- 가스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관련 구체적 기준 마련

내용

- 가스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를 구체화
- (정보전송자) 「도시가스사업법」제2조2호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자, 「민법」제32조에 따른 한국도시가스협회
- (전송정보)

정보 전송자	정보 항목	세부항목	대상 기간
도시가스 사업자 및 한국도시 가스협회	계약정보	계약번호, 도로명주소, 계약일자	전송 요구 시점
	감면정보	감면자격, 감면금액	
	검침정보	검침방법, 검침일자, 검침시간, 당월 가스지침, 전월가스지침, 당월가스 사용량, 일별가스사용량, 시간별 가스사용량	전송 요구 시점으 로부터 3년
	청구정보	청구연월, 사용시작일자, 사용종료 일자, 당월가스사용량, 청구금액, 기본요금, 사용요금, 부가가치세, 할인금액, 가산금액	
	납부정보	납부일자, 납부금액, 납부방법	
	미납정보	미납연월, 미납금액	

규제대안2	대안명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관련 기본적 기준 마련
	내용	○ 가스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의 기본적 사항만을 규정 - (정보전송자) 구체적 세부기준 없이 전송요구 대응이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능력을 보유한 자로 법률 및 시행령상 규정된 기본적 기준만을 제시하여 해당 여부는 자율 판단 - (전송정보) 구체적인 세부기준 없이 법률 및 시행령상 규정된 요건만을 기본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보 범위는 자율적 판단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구체적인 기준 마련으로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및 국민들의 권리 행사를 보장	○ 정보전송자로 지정된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 전송 의무 이행에 대해 일부 부담 발생 가능
규제대안2	○ 기본적 기준만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상 해당여부는 자율적 판단에 맡겨 수범자의 자율성 보장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의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국민의 권리 보장 제한 ○ 수범자와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혼란 가중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조치결과
에너지 마이데이터 실무협의체	제도 관련 의견청취 (‘25.3월~’25.8월)	필요사항 고시안 반영

- 부문·분야별 주요기업 대상으로 처리 중인 개인정보 항목을 조사 후, 데이터 정제(표준화), 정보송·수신자 의견수렴 등 데이터 선별 작업*

- * '22~'24년 마이데이터 표준화 사업을 통해 부문·분야별 정보맵(데이터 구성도) 작성
-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제외 정보를 배제하고 전송대상정보(안) 마련

<전송 제외정보>

- ① 정보주체 본인에 관하지 않은 정보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별도로 생성한 분석·가공 정보
- ③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로 처리가 어려운 정보

- 해당 전송대상정보(안)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위, 산업부, 관련 기업·기관이 참석하는 에너지 부문 마이데이터 실무 협의체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제정안 마련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 및 정보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
- 가스 분야의 정보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와 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실현 지원 및 정보전송자 및 수신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3. 규제목표

- 정보주체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번거로운 서류 발급이나 행정절차 경감, 전송 정보를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민 편의성 증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한 정보주체의 효용성 및 편의성 증진과 정보전송자, 수신자 및 정보주체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상기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목적 및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재검토 기한(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미적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가스 분야 정보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와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가스 분야 정보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와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미적용	가스 분야 정보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와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적용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가스 분야 정보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와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후 평가관리 적용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가스 분야 정보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와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① 유럽 GDPR

-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본인전송과 제3자전송을 구분하고, 규모 및 분야 상관 없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 의무를 부과
- “체계적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받을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방법 등은 규정하지 않음

② 영국

- 소비자의 데이터 접근 보장 및 기업 경쟁력·기회 창출을 목표로 Midata 프로그램(2011)을 4개분야(에너지, 예금계좌, 신용카드, 통신)에서 시작
- “스마트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발표(2024)하고, 7개 분야* 비금융 분야 데이터 공유를 단계적으로 추진

* 7개 분야(은행, 금융, 에너지 및 연료, 통신, 운송, 소매, 주택 구매) 중 은행만 시행, 에너지 및 통신은 추진 중

③ 핀란드

- 데이터 주권을 구현하는 시민운동 일환으로 시작(2010), 이후 정부 공식 아젠다로 채택, 비영리기구 ‘마이데이터 글로벌’(2018) 중심으로 발전
- 금융, 교통 외에도 행정,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운영되고 있고, 정보의 2차 활용, 제3자 서비스 제공 등도 가능

④ 미국

- 오바마 정부는 투명성, 데이터혁신,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목적에서 정부·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이 접근 및 활용토록 ‘스마트 공시’를 추진(2011)
- 에너지 분야의 그린버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개인이 다운받거나 제3자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하여 활용 가능

< 타법사례 >

①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18항 및 제28조의3

영 제2조(정의) ⑱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후략)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영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후략)

** **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② 전자정부법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5항 및 시행령 제51조의2제8항,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별표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해당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1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본인정보의 종류를 종합하여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고시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 ① 영 제51조의2의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정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본인정보 종류를 제공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제11조 관련)

정보보유기관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한국가스공사	가스요금감면여부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제정안은 가스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와 전송요구대상정보를 산업통상부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한 사항이며,
- 정보전송자는 현재 구축중인 에너지 분야 중계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보전송자 및 전송항목은 시스템의 구축 현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전송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마련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 회의, 에너지 마이데이터 실무협의체 회의, 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고시안을 마련하였음

2. 향후 평가계획

- 개인정보처리자, 정보주체가 동 제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등 관련 참여자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사항 없음

법령명	규제 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동 제정안은 가스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전송자 및 전송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실현 및 정보전송자 및 수신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	-	-

규제대안1: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관련 구체적 기준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전송요구)에 대응하여 대상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비용(시스템 구축, 전송)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구축중인 에너지분야 중계시스템(중계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부 보전이 가능. 나아가 정보전송자의 전송의무는 전송시스템의 구축 상황, 중계시스템 연계 현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고시안 별표)되므로 전송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 경감
- (편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해 에너지 요금 절감 방안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번거로운 서류 발급이나 행정절차 생략으로 국민 효용성 및 편의성이 증진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관련 구체적 기준 마련>

① 피규제 정보전송자: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에너지(가스) 분야 정보전송자
활동제목	가스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 구체화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개요) 보호법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3호에 따라, 에너지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의 가스 분야 관련 개인정보 전송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본 고시 제정안은 해당 의무와 관련하여 가스 분야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 (피규제대상)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34개)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한국 도시가스협회 ○ (비용분석) 본 고시 제정안 [별표]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가스 분야 전송 요구 대상 정보가 명확화되었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응하여 정보전송자는 계약정보, 감면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전산상 저장·관리해야 하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API 방식으로 전송해야 함. 이를 위한 시스템 관리 및 전송설비 구축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송 요구 대상 정보는 이미 각 정보전송자가 보유·관리하고 있음 - 또한, API 구축·관리 비용이 시스템 구조, 보안 수준 등 기술환경에 따라 큰 편차가 있어 표준화된 산정이 어렵고, 전송 요구 건수 역시 제도 도입 초기로서 수요 예측이 어려워 전송량 기반 단가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의료, 통신 등 기존의 사례와 유사하게 정성분석함 - 다만 정보전송자는 현재 구축중인 에너지분야 중계시스템*(중계 전문기관)의 기능을 활용할 경우, 개별 기관과 직접 API를 연계할 필요가 없으며 중계전문기관**이 보안 및 인증 기능을 대신 처리하게 되므로 전송에 필요한 비용은 일부 보전이 가능함. 나아가 정보전송자의 전송의무는 전송시스템의 구축 상황, 중계시스템 연계 현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고시안 별표)되므로 전송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 경감 * ‘에너지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사업’ 완료(25년) ** 정보전송자와 정보수신자 간 개인정보 전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업무(보호법 제35조의3 제1항 및 제2호)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 하는 업무를 수행함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가스분야 개인정보의 원활한 전송요구권 실현
편익항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정보주체는 그간 개인정보처리자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수집·동의한 이후 개인정보 활용에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러 왔으나, 개인정보 전송요구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호법에서 보장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음 - 정보주체는 에너지 요금 절감 방안 제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번거로운 서류 발급이나 행정절차 없이 본인이 필요한 곳에 데이터를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 효용성 및 편의성이 증진됨 -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 위급상황 알림,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 편익도 증가함